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 2.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